

# 公正去來關係便覽

— 一公正去來告, 示 및 運用기준, 不公正去來 —

## 調 查 部

### I. 公正去來關係法令編

####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拔萃〉

**第 7 條(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로서 經濟企劃院長官이 公正한 去來를 阻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하여 不公正한 去來行爲로 指定한 行爲(以下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不當하게 去來相對方을 差別的으로 取扱하는 行爲.
2. 不當하게 競爭者의 고객을 自己와 去來하도록 強制하는 行爲.
3. 自己의 去來上의 地位를 不當하게 利用하여 相對方과 去來하는 行爲.
4. 去來相對方의 事業活動을 不當하게 拘束하는 條件으로 去來하는 行爲.
5. 商品 또는 用役에 對한 虛偽 또는 誇張된 廣告를 하거나 商品의 質 또는 量을 속이는 行爲.
6. 暴利를 目的으로 物品을 買占하거나 販賣를 忌避하는 行爲.
7. 故意로 物品의 生産을 中斷 또는 減縮하거나 當該物品의 出庫를 制限하는 行爲.

**第 8 條(競爭制限行爲의 禁止)** ① 事業者는 契約, 協定·決議·其他 어떠한 方法으로도 다른 事業者와 共同으로 公共의 利益에 反하여 一定한 事業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以下 “競爭制限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價格을 決定·維持 또는 引上하는 行爲.
2. 商品의 販賣條件, 用役의 提供條件 또는 그 代價의 支給條件을 定하는 行爲.
3. 商品의 生産 販賣나 出庫의 制限 또는 用役의 提供을 制限하는 行爲.
4. 去來地域 또는 去來相對方을 制限하는 行爲.

② 事業者가 不況克服·産業合理化 等 不得已한事由로 競爭制限 行爲를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競爭制限 行爲의 內容 및 그 行爲를 하고자 하는 期間에 關하여 미리 政府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 政府는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競爭制限 行爲를 承認한 事由가 없어졌거나, 當該競爭制限行爲가 經濟狀況의 變動으로 公共의 利益을 害하게 된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承認을 取消하거나 一定한 期間 그 行爲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第 9 條(是正命令 等)** 政府는 第 7 條 또는 第 8 條第

1項의 規定에 의한 不公正去來行爲나 競爭制限行爲를 하고 있는 事業者에 대하여는 그 行爲의 是正 또는 中止를 命하여야 한다.

**第12條(物價安定委의 議決事項)** 다음 各號의 事項에 關하여는 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1. 第2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最高價格의 指定과 廢止에 關한 事項.
2.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料金의 決定에 關한 事項.
3. 第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獨寡占價格의 變更과 指定에 關한 事項.
4. 第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獨寡占事業 및 獨寡占事業者의 範圍와 基準에 關한 事項.
5.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緊急需給調整措置 및 그 解除에 關한 事項.
6. 第7條의 規定에 의한 不公正去來行爲의 指定에 關한 事項.
7. 第8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競爭制限行爲의 承認取消과 停止命令에 關한 事項.
8. 第9條의 規定에 의한 不公正去來行爲 및 競爭制限行爲의 是正 또는 中止의 命令에 關한 事項.
9.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關한 事項.
10.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告發에 關한 事項.

**第13條(意見聽取)** 委員會는 第12條 各號의 事項을 審議議決함에 있어서 必要할 때에는 利害關係人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第16條(報告 및 檢査等)** ① 經濟企劃院長官 또는 主務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事業者에 對하여 原價 및 經營狀況에 關한 報告 또는 關係資料의 제출을 命하거나 그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者의 事務所나 事業場에서 帳簿·書類 其他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關係인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18條(異議申請)** ① 이 法에 의한 處分을 받은 者가 그 處分에 대하여 不服이 있을 때에는 主務部

長官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은 그 處分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處分이 있는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主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委員會에 附議하여야 한다.

**第19條(所管이 不分明한 事項)** 이 法에 規定한 主務部長官의 權限中 所管이 不分明한 事項에 대하여는 經濟企劃院長官이 이를 行使할 수 있다.

**第21條(適用除外)** 特定の 事業에 關하여 特別한 法律이 있는 경우에 그 事業者가 當該法律에 의하여 行하는 行爲에 대하여는 第7條 및 第8條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5條(罰則)**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8條第3項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여 競爭制限行爲나 不公正去來行爲를 繼續한 者.

**第26條(同前)**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7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不公正去來行爲를 한 者.

2. 第8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競爭制限行爲를 한 者.

**第30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其他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24條내지 第27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1條(告發)** 第24條내지 第26條의 罪는 主務部長官의 告發이 있어야 論한다.

##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條 및 第8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後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關한

### 法律施行令拔萃〉

**第14條(不正去來行爲의 指定)** ① 經濟企劃院長官이 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不正去來行爲를 指定할 때에는 모든 事業分野에 共通의로 適用되는 不正去來行爲와 特定事業分野에만 適用되는 不正去來行爲를 區分하여 指定할 수 있다.

② 經濟企劃院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正去來行爲를 指定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15條(告示의 方法)** 第3條第1項·第4條第2項 第5條第1項·第7條第2項·第13條第2項 및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는 官報에 掲載하여야 한다. 다만,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當該 地域의 主要 日刊新聞에 掲載하거나 關係人에게 通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第16條(競爭制限行爲의 承認)** ① 法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競爭制限行爲의 承認은 經濟企劃院長官이 行한다.

② 經濟企劃院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競爭制限行爲의 承認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査하여야 한다.

1. 法 第8條第2項에서 定한 要件에의 該當與否
2. 競爭制限行爲의 內容 및 그 程度가 불가피한 最少限의 것인가의 與否.
3. 競爭制限行爲를 하고자 하는 期間의 適正與否
4. 一般消費者와 關聯事業者의 利益을 不當하게 害할 우려가 없는가의 與否.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競爭制限行爲의 承認을 얻고자 하는 者는 主務部長官을 거쳐 經濟企劃院長官에게 이를 申請하여야 한다.

④ 主務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때에는 그 申請書에 第2項 各號의 事項에 관한 意見書를 添附하여 經濟企劃院長官에게 送附하여야 한다.

**第17條(是正命令 等)** 法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停止命令과 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 또

는 中止命令은 經濟企劃院長官이 行한다.

**第18條(違反行爲의 申告 等)** ① 事業者가 法 第7條 또는 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法 第8條第3項 또는 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여 不正去來行爲나 競爭制限行爲를 하고 있음을 認知한 者는 그 內容을 明示하여 이를 主務部長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主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確認한 後, 그 申告內容과 確認結果를 經濟企劃院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③ 主務部長官이 事業者가 第1項의 위반 行위를 하고 있음을 認知한 때에도 第2項과 같다.

**第23條(資料의 提出命令 等)** ① 法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價 및 經濟狀況에 관한 報告나 關係資料의 提出命令은 그 內容과 期間을 明示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經濟企劃院長官 또는 主務部長官은 法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에게 定期 또는 隨時로 原價 및 經營狀況에 관한 關係資料의 提出을 命할 수 있다.

③ 主務部長官은 法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한 때에는 그 檢査結果를 經濟企劃院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第24條(消費者 保護)** 經濟企劃院長官 또는 主務部長官은 消費者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消費者의 健全하고 自主의인 組織活動을 助長하고 其他 消費者保護를 위한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II. 告示 및 運用基準 編

(經濟企劃院 告示 第3號)

### 1. 競爭制限行爲 承認申請 및 報告要領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8條 第2項 및 同法施行令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競爭制限行爲의 承認申請과 競爭制限行爲의 廢止 및 脫退者의 報告에 關한 要領을 다음과 같이 告示한다.

1976年 4月 15日

經濟企劃院長官

### 1. 競爭制限行爲의 承認申請

가. 1976. 4. 15 이후 同法 第 8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競爭制限行爲(이하 “競爭制限行爲”라 함)의 承認을 얻고자 하는 事業者는 同法施行令 第16條第 3 項의 規定에 따라 競爭制限行爲 承認申請書를 主務部長官을 거쳐 經濟企劃院長官 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나. 前項의 申請書는 正本 1통과 副本 2통을 事業者의 連記名으로 提出하되, 그 代表者를 指定하여야 한다.

다. 事業者 團體는 團體自體가 競爭制限行爲에 該當하는 事業을 하지 않는 한 申請할 수 없다.

라. “가”項의 申請書에는 다음에 揭記하는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 1) 競爭制限行爲가 同法施行令 第16條第 2 項에 規定한 要件에 適合한 것임을 說明하는 書面
- 2) 競爭制限行爲에 관한 協定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 마. 競爭制限行爲廢止의 報告

同法 第 8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競爭制限行爲의 承認을 얻는者가 當該 競爭制限行爲를 廢止하였을때에는 보고서의 正 副本 各 2 通을 主務部長官을 거쳐 經濟企劃院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 바. 脫退者에 關한 報告

同法 第 8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競爭制限行爲의 承認을 받은 者가 當該 競爭制限行爲로부터 脫退하는 事業者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서의 正·副本 各 2통을 主務部長官을 거쳐 經濟企劃院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經濟企劃院 告示 第7號)

### 2. 不公正去來行爲 指定(告示)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 7 條 및 同法施行令 第 14 條의 規定에 依하여 同法 第 12 條의 規定에 依한 節次를 거쳐 모든 事業分野에 共通의으로 適用되는 不公正去來行爲를 다음과 같이 指定 告示

한다.

1976年 7月 22日

經濟企劃院長官

### 不公正한 去來行爲

#### 1. 去來拒絕

一定한 事業分野의 市場을 支配하고 있는 事業者가(以下 市場支配의 地位에 있는 事業者라 함) 正常的인 去來慣行에 비추어 合理的인 理由없이 自己가 販賣하는 物品 都·散賣價格體系가 무너지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또는 競爭關係에 있는 다른 事業者와의 去來를 防止하기 위하여 去來를 拒絕하는 것.

#### 2. 差別價格

一定한 事業分野에서 다른 事業者의 事業活動을 妨害하거나 排除하기 위하여 地域 또는 相對方에 따라 正常的인 去來慣行에 비추어 合理的인 理由없이 顯著하게 差別的인 價格(割増·割引을 包含)으로 物品 또는 用役을 供給하거나 買入하는 것.

#### 3. 集團排斥

競爭關係에 있는 事業者가 集團行爲로서 어느 事業者와의 去來를 拒絕하거나 去來條件을 差別的으로 取扱하거나 또는 相對方에게 그러한 行爲를 하게 하는 것.

#### 4. 去來強制

去來上 優越한 地位에 있는 事業者가 自己가 供給하는 物品(또는 用役)과 技術上 關聯이 없는 다른 物品(또는 用役)을 끼워서 買入하지 않으면 販賣하지 않는다는 등 不當한 條件을 提示하여 去來를 하는 것.

#### 5. 優越의 地位의 濫用

市場支配의 地位에 있거나 去來上 優越한 地位에 있는 事業者가 正常的인 去來慣行에 비추어 合理的인 理由없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는 것.

① 債權確保에 必要한 限度를 넘어서 相對方의 資產 또는 株式의 讓渡 其他의 利益을 提供하게 하거나 不當하게 相對方의 企業運營에 干涉하는 條件으로 去來하는 境遇

② 契約된 物品의 受渡를 拒絕하거나 不當하게 返

品하는 등 正常的인 去來慣行에 비추어 顯著히 不利하게 去來內容을 變更하여 去來하는 境遇.

③ 下都給을 받은 事業者에 對하여 그 代金の 支給을 法定期日이나 正常的인 去來慣行에 비추어 故意로 不當하게 遲延시켜 去來하는 경우.

#### 6. 去來處의 制限

市場支配의 地位에 있는 事業者가 正常的인 去來慣行에 비추어 合理的인 理由없이 自己가 販賣하거나 購入하는 物品에 對하여 相對方의 去來處를 制限하여 去來하는 것.

#### 7. 再販賣價格 維持

經濟企劃院長官이 一般消費者의 利益을 不當하게 害할 憂慮가 있다고 하여 따로 禁止對象品目으로 指定한 경우에 그 物品을 生産販賣하는 事業者가 自己가 販賣하는 以外의 去來段階別 價格을 미리 定하여 그 價格대로 販賣할 것을 強制하는 規約 등 拘束條件을 붙여서 去來하는 것.

#### 8. 虛偽·誇張廣告

物品(또는 用役)의 材料·成分·品質·規格·含量 原產地·製造方法·効能·其他의 內容이나 去來條件(價格, 數量, 決濟條件)에 關하여 事實과 다르게 表示하거나 競爭關係에 있는 다른 事業者의 物品(또는 用役)을 事實과 다르게 中傷, 誹謗하는 등 宣傳, 廣告를 함으로써 顧客을 誘引하거나 一般消費者를 欺瞞하는 것.

#### 9. 買占賣惜

事業者가 國民生活에 緊要한 物品을 對象으로 하여 暴利를 얻을 目的으로 自己의 正常的인 所要量보다 過大하게 買入하여 保有하거나 自己가 生産, 販賣하는 物品의 供給能力이 充分함에도 不拘하고 販賣를 忌避하는 것.

#### 10. 生産, 出庫調節

物品의 價格이 顯著하게 昂騰하거나 昂騰할 憂慮가 있는 경우에 當該 物品을 生産하는 事業者가 不當하게 價格을 上向操作하기 爲하여 그 生産을 中斷하거나 正常的인 水準에 比하여 顯著하게 生産을 減縮하거나 또는 物品의 出庫를 制限하는 것.

## 附 則

(施行日)

이 告示는 1976,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 3. 虛偽, 誇張廣告에 關한 運用基準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7條에 依하여 指定된 不公正去來行爲 8號(虛偽, 誇張廣告)의 解釋과 運用에 關한 內部指針으로서 그 基準을 다음과 같이 定한다.

다 음

#### 1. 規制되는 行爲

가. 物品(또는 用役)의 內容이나 去來條件에 關하여 事實과 다르게 表示하거나

나. 競爭者의 物品(또는 用役)을 事實과 다르게 中傷誹謗하는 등 宣傳, 廣告를 함으로써

다. 顧客을 誘引하거나 一般 消費者를 欺瞞하는 경우

#### 2. 規制의 基準

가. 對 象

顧客을 誘引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事業者가 自己 또는 다른 競爭業者가 供給하는 商品(또는 用役)의 (註1) (註2) (註3) 品質·規格·原產地·製造方法 其他의 內容이나 價格, 數量 其他의 去來條件에 對하여 行하는 表示 其他의 廣告로서 다음에 揭記하는 것을 말함.

1) 商品, 容器 또는 包裝自體와 이들의 添附物에 의한 表示 其他의 廣告

2) 見本, 傳單, 팜플렛, 廣告성냥, 入場券 其他 이에 類似한 것에 의한 廣告

3) 포스타, 간판, 네온싸인, 에드바운, 其他 이에 類似한 廣告

4) 新聞, 雜誌, 其他의 出版物, 放送, 映寫 또는 電光에 의한 表示, 其他 公衆에 對한 廣告

5) 訪問廣告, 實演에 의한 廣告 등

註1) 品 質

原材料·純度·添加物·鮮度·營養價 等을 말함.

註2) 規 格

品質 其他의 內容에 對하여 國家, 公共團體

또는 民間團體가 定한 規格, 等級, 基準 등 을 말함.

註 3) 其他의 內容

間接的으로 品質, 規格에 影響을 미치는 有 効期間 등을 말함.

註 4) 去來條件

商品(用役)의 內容以外에 價格, 數量과 保 證期間, 支給條件 「아프터 서어비스」등이이 에 該當됨.

나. 虛偽, 誇張의 要件

一般 消費者에 對하여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는 것.

- 1) 商品(또는 用役)의 內容에 對하여 實際보다 顯著히 優良하다고 誤認시키는 경우(註 5.6)
- 2) 去來條件에 對하여 實際보다 顯著히 有利하다고 誤認시키는 경우(註 5.6)
- 3)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用役)의 內容이나 去來 條件이 다른 競爭業者가 供給하는 것보다 顯著히 優良 또는 有利하다고 誤認시키는 경우(註7)
- 4) 다른 競爭業者가 供給하는 商品(用役)의 內容 이나 去來條件이 實際보다도 顯著히 不良 또는 不利하다고 宣傳, 廣告하는 경우(註 6.7)

註 5) 一般消費者를 誤認시키는 경우

- ① 表示 其他의 廣告가 一般消費者에게 주는 印象 등이 實際의 事實과 差異(誤認)가 있을 것.
- ② 廣告에 對한 事業者의 故意過失은 不問
- ③ 文字 繪畫등에 의한 積極的인 表現以外에 表示해야 할 重要한 事項을 消極的으로 表現하지 않았기 때문에 誤認시키는 것을 包含
- ④ 誤認可能性이 있으면 充分하기 때문에 誤認의 結果 表示된 商品의 購入 與否는 不問
- ⑤ 虛偽, 誇張의 程度는 廣告의 特性에 비추어 一般的으로 認容되는 程度를 넘어서 不當하게 顧客을 誘引하거나 公正한 競爭을 阻害할 憂慮가 있는 경우

註 6) 實際의 事實보다 顯著히 優良(또는 有利)한 지의 與否, 一般消費者가 評價하는 利用價 值, 技術的인 試驗分析結果 및 市場價値의

高低 등 去來狀況 등을 基準으로 定함.

註 7) 眞實한 事實의 比較廣告

廣告속에서 競爭事業者가 供給하는 商品(用 役)의 內容에 對해서 事實과 같이 比較宣傳 하는 것 自體는 禁止되지 않으나 他社製品 의 內容을 事實과 다르게 引用하는 경우에 는 規制함.

3. 規制를 받는 者

- 1) 不當한 表示, 宣傳 등 廣告를 한 商品(用役)을 供給하는 事業者(當該 商品을 生産, 販賣하는 事業者 또는 用役의 提供業者)
- 2) 從業員이 虛偽, 誇張廣告를 한 경우 事業者에 對해 責任이 歸屬됨.

### Ⅲ. 不公正去來編

#### 1. 不公正去來行爲指定(總括表)

法 7 條 의 各 號	不公正去來行爲指定
1) 不當하게 去來相對 方을 差別的으로 取 扱하는 行爲	① 去來拒絕 ② 差別價格 ③ 集團排斥
2) 不當하게 競爭者와 의 顧客을 自己와 去 來하도록 強制하는 行爲	④ 去來強制 (끼워팔기 등)
3) 自己의 去來上의 地 位를 不當하게 利用 하여 相對方과 去來 하는 行爲.	⑤ 優越的 地位의 濫用 ○ 利益提供등의 強要 ○ 去來內容의 不當變 更 ○ 都給代金の 支給遲 延
4) 相對方의 事業活動 을 不當하게 拘束하 는 條件으로 去來하 는 行爲.	⑥ 再販賣價格 維持 ⑦ 去來處의 制限
5) 虛偽 또는 誇張된 廣告를 하거나 質 量을 欺瞞하는 行爲	⑧ 虛偽, 誇張廣告
6) 暴利를 目的으로 物 品을 買占하거나 販 賣를 忌避하는 行爲	⑨ 買占賣惜

7) 生産을 中斷 減縮 하거나 出庫를 制限 하는 行爲	⑩ 生産, 出庫調節
-------------------------------------	------------

## 2. 不公正去來行爲에 對한 措置

### 1. 是正, 中止命令

不公正去來行爲를 하고 있는 事業者에 對하여 그 行爲의 是正 또는 中止를 命하여야 한다(法 9條).

### 2. 處 罰

가. 政府의 是正, 中止命令에 違反하여 不公正去來行爲를 繼續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懲役刑과 罰金刑의 併科可能)

나. 法 第7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不公正去來行爲를 한 者에 對하여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함(是正 中止命令을 받지 않고도 違反行爲만으로 處罰)

### 3. 告 發

不公正去來行爲의 違反者에 對한 處罰은 主務部長官의 告發이 있어야 함.

### 4. 適用除外

特定の 事業에 關하여 特別한 法律이 있는 경우에 그 事業者가 當該 法律에 依하여 行하는 行爲에 對하여는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에 關한 規定(第7條)은 適用하지 아니함.

## 3. 不公正去來의 處理要綱('76. 9. 1)

### 1. 規制의 目標

1) 自由競爭의 過程에서 使用되는 各種 競爭沮害的인 行爲를 排除

2) 값싸고 品質 좋은 物品(用役)이 더 잘 팔리는 競爭秩序의 確立.

### 2. 規制의 方向

가. 顯著하고 明白한 弊害를 隨伴하는 不公正去來行爲를 規制對象으로 하되

1) 市場支配的 地位에 있거나 去來上 優越한 地位에 있는 者의 不公正去來行爲

2) 虛偽, 誇張廣告와 다른 競爭者의 物品(用役)에 對한 中傷, 誹謗

3) 其他 中小企業者와 消費者保護와 關聯되는 不公正去來를 重點으로 規制

나. 現行 流通體系와 去來慣行을 可及의 尊重

다. 違反行爲에 對하여는 違法狀態의 原狀回復等 迅速한 是正(中止)措置講究

라. 誣告等 虛構한 申告로 因한 謀陷風潮의 除去

### 3. 違反事件의 端緒

가. 事件開始의 端緒

(1) 違反行爲를 認知한 者의 申告(一般人)

(2) 職權으로 認知(主務部長官)

(3) 關係機關의 通知(檢察總長等)

나. 申告節次

(1) 違反事實을 認知한 者는 主務部長官 또는 各市·道의 새 生活센터에 申告한다.

(2) 各市·道의 새 生活센터는 違反行爲의 申告가 있을 때는 市·道 知事를 經由하여 關係書類를 主務部長官에게 移牒한다.

(3) 所管의 決定: 取扱品目 또는 事業의 性質에 따라 決定하되 2個 以上의 主務部에 關聯되는 경우, 經濟企劃院과 協議하여 主務部를 決定한다.

다. 申告方法

(1) 申告時에는 原則적으로 書面에 依한 記名申告로 하고 別添標準樣式을 使用토록 勸奨한다.

(2) 가능한 限 違法으로 判斷하는데 必要한 證據 其他 疎明料를 添附하여야 한다.

라. 處分의 種類

(1) 主務部長官은 申告內容이 虛偽事實의 誣告인 경우 却下하거나 예비심사결과 위법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棄却할 수 있다.

(2) 經濟企劃院長官은 主務部長官이 通報한 申告內容에 對하여 審査結果에 따라 다음과 같은 處分을 한다.

(가) 不問處分

物價安定 { ① 審査結果 처음부터 違反事實 委員會報告 이 없었던 것이 判明된 경우.  
② 違反事實은 있었으나 事實이 輕微하거나 原狀回復된 경우.

(나) 是正中止  
命令  
物價安定  
委員會議決

- ① 違反行爲者가 勸告를 應諾한  
경우(略式節次에 의한 是正中  
止命令)
- ② 違法行爲에 對한 立證이 明白  
한 경우(正式節次에 依한 違法  
性立證으로 是正中止命令)

- (2) 主務部長官의 告發이 있는 경우 檢察廳이 該當  
事件을 起訴하고 法院의 裁判 節次가 開始된다.
- (3) 不公正去來行爲에 對한 處罰은 다음과 같다.

- 單純違法 → 2千萬원 以下의 罰金(26  
條)
- 是正中止命令違反 →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  
萬원 以下의 罰金(25條)

다. 處 罰

<節 次>

(1) 主務部長官은 不公正去來에 對한 是正中止命  
令을 違反하는 경우 物價安定委員會의 議決를  
거쳐 法 第31條에 依한 告發을 한다.

바. 異議申請

處分에 不服하여 法 第18條에 依한 異議申請이 있  
는 경우 主務部長官이 接受하여 經濟企劃院을 經由,  
物價安定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裁決한다.

**不 公 正 去 來 申 告 處 理 期 間**

근거법령	민원사무명	처리기관및기간				구비서류명	비고
		접수	경유	처리	제		
물가안정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 9조 및 제12조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주무부 (30일)	경제기획원 (45일)		(75일)	1) 不公正去 來行爲申告 書 2) 違反事 件審査調書	경제제한 행위의 申 告 및 승인 도함.
		새생활센터 (이첩) (10 일) 주무부 (20 일)		경제기획원 (45일)	(75일)		
물가안정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불공정거래행 위의 시정 중지 의 신청	주무부 (30일)	경제기획원 (30일)	주무부 (15일)	(75일)		

**第35號 食 品 工 業**

1970年 10月 18日 登錄 第 355號 1976年 12月 31日 發行

發行兼 朴 炳 圭  
編輯人

發行處 社團 韓 國 食 品 工 業 協 會  
法人

서울特別市 中區 忠武路 3街 59의 22

(영한빌딩 별관 202. 203호)

☎ 8760 ☎ 6035

對替口座 · 서울中央 610501

印刷人 由 盛 印 刷 株 式 會 社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冷泉洞 218

☎ 3791 ☎ 5826

(隔月刊)